

의안번호	제181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6월 일 (제 301 회)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6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호
----------	------

제출연월일 : 2011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말, 사슴 및 가축이외 동물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 급식용 축산물 등 검사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축검사 수수료(별표) 인상
 - 소 : 1,200원 → 3,000원
 - 돼지 (양, 염소 포함) : 400원 → 1,000원
-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
 - 말, 사슴 : 3,000원
 - 가축이외의 동물 : 1,000원
-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안 제6조)
 - 도내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명의로 급식용 축산물의 검사외시 : 50% 감면
 -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 30% 감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가축·축산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 ①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잔류물질검사성적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의뢰인은 별표에서 정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내야 하고, 같은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를 “지방자치단체”로, “각호의 1에 한하여”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정축산물”을 “부정축산물로 의심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각급 학교장,”을 “보육시설의 장, 유치원장, 각급 학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을 “연구소와 축산물 위탁검사계약 업소 의뢰 축산물 및 수출”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검체를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을”를 “제9조를”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의뢰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도축검사 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3,000	두 당
2. 돼지, 양(염소)	1,000	두 당
3. 가축 외의 동물	1,000	두 당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시 험 의 퇴 접 수 증	
건 명	
민 원 인	
수 수 료	원정
처 리 기 간	년 월 일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 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	

[별지 제4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검사성적서 <input type="checkbox"/>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②성적서발급번호			발행년월일	
③신청부수				
④용도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인 또는 서명) </p> <p style="margin-top: 20px;">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2. 외국어번역문	1부당	2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p>제3조(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시험·분석·감정(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신청서, 축산물검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수출용 잔류물질검사</p>	<p>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법의 규정에 따른 가축·축산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p>제3조(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p>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용검체소요량을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①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잔류물질검사성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검사·시험성적서는 의뢰인의 원에 의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송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

가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

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도축 및 원유 검사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 의뢰기준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동 기준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시험 성적서를 재교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축산물 단속에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의뢰인은 별표에서 정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내야 하고, 같은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내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축산물로 의심되어 단속에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삭제>

②도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 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등의 결과는 검사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신설>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② 도내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장, 유치원장, 각급 학교장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③ 연구소와 축산물 위탁검사계약업소 의뢰 축산물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 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가 끝난 검체를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시험 성적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 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한 검사·시험성적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발췌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⑤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25]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수산물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7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11.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전문개정 2010.5.25]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이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26]